

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10·3·23 규칙 제416호
일부개정 2015·12·31 규칙 제58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제2조(교육과목) ① 「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술교육은 취업·부업·소규모의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, 취미교육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삶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·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은 언제든지 신규 편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제3조(정원) 과목별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제4조(이용자의 범위)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자에 한하며,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<개정 2015·12·31>

1. 이천시에 거주하는 여성
2. 인접 시·군에 거주하는 여성
3.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5조 삭제 <2015·12·31>

제6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

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2·31>

제7조(교육기간) 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1. 정규과정 : 3개월~5개월
2. 단기과정 : 1개월~3개월
3. 그 밖의 수시과정 : 1개월 이내

제8조 삭제 <2015·12·31>

제9조(퇴관명령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1.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·변경 하거나 기물을 훼손·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람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
3.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
4. 타인에게 피해를 줄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5. 그 밖에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 등

제10조(손해배상) 시장은 제9조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제11조(강사 자격 등) ① 시장은 기술교육 또는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위촉기간은 교육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③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2·31>

1.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
2.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
3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
4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

제12조(세칙)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12·31 규칙 제58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접수번호	여성회관 사용(변경)허가 신청서			
사 용 자				
	주 소		전화번호	
사용목적 및 행사 개요	목 적	(참석예정인원 명)		
	행사내용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 ~ 년 월 일 시까지(일)			
사용할 시설 및 부대 시설	시 설 명	(사용료 원)		
	부대시설	(사용료 원)		
사 용 료	납부 : 원정 감면			
감면사유	(※해당자에 한함)			
첨부서류	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)			
<p>위와 같이 귀 회관의 ()사용을 신청하오니 (변경)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주 소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명: (인)</p> <p>이 천 시 장 귀하</p>				

접수번호	여성회관 사용(변경) 허가서			
사 용 자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~ 년 월 일 시(일)			
사 용 료	납부 : 원정 감면			
<p>위와 같이 ()사용을 (변경)허가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천 시 장</p>				

[별지 뒤쪽]

허 가 조 건

1. 시설내에 병류 및 캔류의 음료수 반입을 금지한다.
2.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한다.
3.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(변상)하여야 한다.
4.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,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5.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서의 장이 대리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.
6. 사용자는 이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접수번호	교육수강신청서				
수강신청과목	성명	한글		생년월일	
		한자			
주소				전화번호	주택(직장)
최종학력	대졸, 전문대졸, 고졸, 기타				핸드폰
수강료	원정		감면		
감면사유	※ 해당자에 한함				
첨부서류	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)				
본인은 귀 회관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년 월 일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신청인 (인 또는 서명) </div> 이천시장 귀하					

접수번호	교육신청접수증				
수강신청과목	성명	한글		생년월일	
		한자			
주소					
개강일시					
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width: 100%;"> 년 월 일 </div> 이천시장					

